

의안번호	2210460
의 퇴 인	김용태 의원
회 답 일	2025.07.31.
추계번호	25C2882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대부 등에 관한 특례)	(제3항) 시·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 (대부 등에 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시·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 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현행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「학교복합시설법」”)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·체육문화시설 등을 말함¹⁾

1)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·문화체육시설

- 그러나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동법 개정안이 2025.7.22.부터 시행될 예정임
 - 시행 예정된 「학교복합시설법」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·문화·복지·체육·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정의함
 - 이에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개념 확대에 따라 폐교재산의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로 사용되는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복합시설 조성 목적의 폐교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액이 이루어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- 교육부는 '23년 「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」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발표함
 - 해당 계획에 따르면 5년간('23~'27)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를 선정하여 1조 8,000억원 규모의 교부금 지원이 이루어짐²⁾
 - 공모를 통해 '23년 39개, '24년 41개, '25년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³⁾ '24년까지 교육부 예산 6,556억원이 투입됨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①학교복합시설로 사용되는 폐교재산이 ②대부를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경우 발생함
 - 전체 87개 사업 중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6건임
 - 한편, '23~'24년 사업 중 공동·위탁 운영되는 사업은 10건으로 전체의 12.5%에 해당함
 - * [참고자료] '23~'25년 공모사업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현황
 - 그러나, 현시점에서 향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될 폐교재산의 수 및 해당 폐교재산에 책정될 사용료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

나.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

다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2) 교육부,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(2023.3), 15p

3) 2025년의 경우 1차 공모만이 이루어진 상태로, 2025.4.10. 7개 사업이 선정됨

- ☐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'23~'25년 공모사업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현황

[참고표 1] '23~'25년 공모사업 시설 용도별 현황

(단위: 개)

구분	선정 사업 수	학교복합시설 용도									
		수영장	체육관	도서관	돌봄 시설	평생 교육 시설	주차장	늘봄	방과후	자기 주도 학습	기타
초	37	14	17	10	23	16	15	14	5	4	18
중	17	3	10	4	4	8	7	1	3	7	11
중고	1	—	—	—	—	1	—	—	1	1	1
고	9	3	6	2	5	4	5	3	1	2	2
폐교	6	3	2	1	2	3	2	2	2	2	4
기타	17	8	9	8	6	8	3	5	3	4	10
합계	87	31	44	25	40	40	32	25	15	20	46

주: '25년 4월 기준 자료임

자료: 교육부, 2025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설명회 자료집 (2025.4), 13p

[참고표 2] '23~'24년 공모사업 시설 소유·운영 주체별 현황

학교복합시설 소유 및 운영 주체	구분	지자체(공단)		교육청·학교		공동/기타(위탁)		미정	
		사업수 (개)	비율 (%)	사업수 (개)	비율 (%)	사업수 (개)	비율 (%)	사업수 (개)	비율 (%)
2023년 공모사업	소유주체	18	46.2	8	20.5	3	7.7	10	25.6
	운영주체	23	59	2	5.1	7	17.9	7	17.9
2024년 공모사업	소유주체	11	26.8	13	31.7	4	9.8	13	31.7
	운영주체	25	61	8	19.5	3	7.3	5	12.2
합계	소유주체	29	36.3	21	26.3	7	8.8	23	28.8
	운영주체	48	60	10	12.5	10	12.5	12	15

주: '25년 4월 기준 자료임

자료: 교육부, 2025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설명회 자료집 (2025.4), 15p